

#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7. 5 . 9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안이유

관광 성수기에 야간 입장객 증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관리시간을 명시하여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자치제정 확충을 기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가. 학교의 명칭이 '국민학교'에서 '초등학교'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개선 보완함.(안 제 4조)

나. 입장료 징수를 24시간 징수 토록하고 징수한 입장료는 당일 12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도록 함.(안 제 6조)

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조 제 4호 중 '국민학교'를 '초등학교'로 한다.

제 6조 중 제 4항을 제 5항으로 하고 제 3항 및 제 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입장료는 24시간 징수한다.

④ 전일 09시 부터 당일 09시까지 징수한 입장료를 당일 12시까지 군 금고에  
납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 4조 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어린이 : <u>국민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제 6조 (입장료 징수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>③ <u>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 16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 4조 (용어의 정의) 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어린이 : <u>초등학교 학생과 .....</u></p> <p>....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6조 (입장료 징수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입장료는 24시간 징수한다.</u></p> <p>④ <u>전일 09시 부터 당일 09시 까지 징수한 입장료를 당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 4항과 같음)</p>